

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-672호

2017. 제2차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계획 공고

인천광역시에서는 고용을 활발히 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「2017년 제2차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계획」을 공고합니다.

2017 . 5 . 18.

인 천 광 역 시 장

1. 사업개요

- 사 업 명: 2017.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
- 사업내용: 지역중소기업 중 일자리창출 기여가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25개 인센티브 지원
 - ☞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
 - ☞ 우대지원제도: 별지 2 참고
- 인증기간: 인증일로부터 2년

2. 대상업종: '별지 1' 참고

3. 신청자격

-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(본사 또는 주공장)에서 2년 이상 정상운영 중인 중소기업

○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율이 5% 이상이고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

가. 중소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

나. 고용증가율(%)산식 : (2016년 12월말 근로자수 - 2015년 12월말 상시 근로자수)
/ 2015년 12월말 상시근로자수 × 100

다.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: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
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 근로자*가 아닐 것

* 단시간 근로자 :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
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

○ 기존 인증기업(인증기간 종료 후 재신청 가능)

◆ 신청자격 유의사항(신청자격 배제) ◆

-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
-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
-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
-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제4조 제1항)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고일 기준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CCC⁺ 이하인 기업

4. 신청 및 접수

- 기 간: 2017. 5. 18. ~ 6. 16.
- 접수방법: 우편 또는 방문접수
- 접 수 처: 인천광역시 일자리정책과 ☎ 032-440-4232)

5. 신청서류 : 3부 제출

-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신청서: 별지 3 참고
 - 증빙자료: 별지 4 참고
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: 별지 5 참고
 -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상 업종 인허가증 사본 각 1부
예)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
 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
 - 기업의 신용평가서 1부
 - 고용보험가입자 명부: 2015.12월~2016.12월, 매월 말일 기준
 - 기타 평가관련 증빙자료
- ※ 신청서식: 인천광역시홈페이지(<http://incheon.go.kr>)의 “고시공고” 에 게시

6. 심사 및 평가

가. 심사기준

- 기업경영 건전성 분야(20점)
 - 기업의 경영상태(20점)
- 일자리 성장성 분야(46점)
 - 근로자 증가수 및 증가율 등(40점)
 - 신규 근로자 고용형태 비율(6점)
- 일자리 안정성 및 근로환경 등 분야(34점)
 - 고용유지율 및 정규직 비율,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건수(20점)
 -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배려(8점)
 - 근로자를 위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(4점)
 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관련 표창 수상(2점)

나. 평가방법: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→ 심사위원회(필요시 개최)

다. 선정방법: 평가결과 평가점수 순위대로 인증기업 선정

7.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

- 사후관리 기간 : 인증일로부터 2년
- 인증취소 사유
 - 감원 등으로 고용증대 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
 - 자격유의사항에 해당할 경우
- 조치사항
 - 해당기업에 대한 인증서 및 현판 회수
 - 우대지원(인센티브) 중단 및 환수 가능 인센티브는 환수조치

8. 선정결과 통지

- 선정시기 : 2017. 7월중(예정)
- 결과통지 : 최종 선정 후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

9. 기타 유의사항

-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
-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,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신청서나 각종 증명(빙)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일자리정책과(☎032-440-4232)로 문의 바람

별지 1	신청대상 업종범위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1. 제조업 : 제조업 전체 업종

2. 제조업관련 서비스업

한국표준산업 분류	업 종 명
382	폐기물 처리업
493	도로화물 운송업(장의차량 운영업 제외)
501	해상운송업(여객 운송업 제외)
521	보관 및 창고업
5294	화물 취급업
52991	화물운송 중개,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
52992	화물포장,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
69320	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(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)
74212	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

3. MICE 관련업

한국표준산업 분류	업 종 명
55111	호텔업
55113	휴양콘도 운영업
55119	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
75992	전시 및 행사 대행업
90110	공연시설 운영업
90191	공연 기획업

4.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

한국표준산업 분류	업 종 명
582	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5911	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
5912	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
612	전기통신업
6209	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관련 서비스업
701	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
702	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
7212	엔지니어링 서비스업

별지 2	인증기업지원사항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연번	부서.기관	사 업 명	지 원 사 항
1	세정담당관	세무조사 유예	-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
2	산업진흥과	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	- 우선지원 및 우대금리 적용 (한도우대 5억, 이차보전 0.5% 우대)
3		중소기업인 대상 시상	-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(가점 3점)
4		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	-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(가점 3점)
5		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운영	-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(가점 3점)
6		품질우수 및 유망중소기업 제품전시회	-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(가점 20점)
7		현장애로해결 프로젝트 지원	-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(가점 2점)
8		유망중소기업 선정	-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(가점 5점)
9		국내·외 전시(박람)회 단체참가 지원	-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(가점 3점)
10		해외 전시(박람)회 개별참가 지원	-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(가점 3점)
11		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	-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(가점 3점)
12		해외시장 개척단 파견	-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(가점 3점)
13		해외 지사화사업 지원	-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(가점 3점)
14		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	-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(가점 3점)
15		디자인개발 지원	-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(가점 1점)
16		자랑스런 기업인 표창	-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(가점 1점)
17		인천 중소기업대상 선정	-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(가점 5점)
18		자동차부품산업 지원	-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(가점 5점)
19		일자리정책과	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
20	일자리박람회		- 참여희망시 우선참가업체로 선정
21	IBITP	인천클라우드센터(ICC) 서비스	- 코로케이션 1년 무상지원 (2년 계약시, 2U이내)
22		시제품제작 지원사업	-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(가점 2점)
23	인천신용보증재단	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	- 신용보증수수료 인하(0.2%)
24	한국무역보험공사	단기수출보험	- 보험료 할인(10%)
25		수출신용보증	- 보증료 할인(선적전 후 10%) - 보증한도 우대(최대 2배)

별지 4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증빙세부내용

1. 기업경영의 건전성(20점)

-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)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고일 현재 유효한 신용평가서 제출

2. 일자리 성장성 평가(46점)

(1) 신규인력 채용 및 근로자수 증가율

[단위 : 명]

구 분	2015년 12월말 근로자 수	2016년 12월말 근로자 수	증가인원	증가율	비 고
최근 1년간				%	퇴사자, 대표 제외

- 해당내용 간략하게 기술 (※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)

-
-
-

(2) 고용형태 : 정규직vs비정규직 비율

[단위 : 명]

구 분	채용인원	정규직인원	비정규직인원	정규직비율	비 고
2015. 12. ~ 2016. 12월				%	

- 해당내용 간략하게 기술 (※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)

-
-
-

3. 일자리 안정성 및 근로환경 등(34점)

(1) 고용유지율 (최근 1년간, 2016. 1월 ~ 2016. 12월말)

(단위 : 명)

구 분	연평균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근로자수													
퇴사자수													

※ 정년퇴직자 제외

○ 해당내용 간략하게 기술 (※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)

-
-
-

(2) 정규직 비율 (최근 1년간, 2016. 1월 ~ 2016. 12월말)

(단위 : 명)

구 분	연평균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정규직수													
비정규직수													
정규직비율													

○ 해당내용 간략하게 기술 (※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)

-
-
-

(3)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(최근 1년간, 2016. 1월 ~ 2016. 12월말)

구 분	실 적	주 요 내 용
정규직의 비정규직화	건 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년 월 : 명 • 년 월 : 명 •

○ 해당내용 간략하게 기술 (※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)

-
-

(3) 근로환경

구 분	실 적	주 요 내 용
1) 지역주민 우선고용	명	지역주민 채용을 한정 채용한 직원 성명기재 중도 퇴사한 경우 기재하지 않음
2) 취약계층 고용현황	명	"청년, 고졸자, 장애인"에 해당되는 직원의 성명을 기재하고, 중도 퇴사한 경우 기재하지 않음
3) 근로기준법 준수여부	건	
4) 직원 복리후생	건	
5) 고용관련 표창수상	건	

※ 제출 증빙자료 : 반드시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것만 인정

1) 채용자 주소 : 주민등록초본

★ 채용자 생년월일만 남기고 주민번호 뒷자리 기재한 경우 수정테이프로 삭제,
등본인 경우 가족사항 모두 수정테이프로 삭제하여 제출

2) 청년(15~34세), 고졸자, 장애인 확인가능 자료

3) 노동고용부에서 발급한 운영실적 등 객관적 증빙자료

4) 사진, 차량등록증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
5) 표창장 사본

○ 해당내용 간략하게 기술 -

※ 실적 평가자료는 분야별로 실적을 모두 기재하고(분량제한 없음), 증빙자료가 있을
경우는 실적 말미에 (증빙자료 1,.....10)형식으로 표기하고 증빙자료 첨부

4. 기타사항

기업현황	자본금	백만원 / 연매출액	백만원
기업의 약력	연도와 월까지 기재		
주생산품 및 제작공정			
기업의 특성	○ ○ ○		

별지 5 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업무추진 관련 기업의 근로자
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
시행규칙에 따라 수집과 이용에 동의를 합니다.

2017년 월 일

기업명 및 대표자 :

(인)

인천광역시장 귀하